-협동조합연구모임-

결과보고서

2014. 1.

인천광역시시의회 협동조합 의원 연구모임

제 출 문

인천광역시의회　귀하

본　완료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월　일

연 구 기 관 : 인천광역시의회 협동조합연구모임

연구책임자 :　　강병수 김영분 신현환 이한구 의원

1. 연구모임 발족 배경과 계획

1) 발족 배경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과 동 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활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에 이어 협동조합이 새로운 사회적 경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의 위기가 고조되고 일상화된 상황에서 소자본과 인적 결합 그리고 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그 특성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적 경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법 제6조(기본원칙)에 “①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기한바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대안경제로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이에 대한 깊은 탐구와 준비를 하는 것이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연구 모임을 발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연구 과제명 :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연구 및 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연구

2. 연구모임의 구성

1) 의원연구모임 구성

- 대표 강병수 의원(문화복지위원회)
- 간사 이한구 의원(산업위원회)
- 회원 김영분 부의장(산업위원회)
- 회원 신현환 의원(문화복지위원회)

2) 시민준비모임

의원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에 경험이 있거나 적극적인 열의가 있는 시민과 함께 준비모임을 결성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진행까지 함께 하고자 함.

연 번	성 명	소 속	직 위	핸드폰 및 e-mail	비 고
1	강병수	인천시의회	의원	010-2689-7815 greenincheon@naver.com	
2	이한구	〃	〃	010-6449-4213 gyeyang@empal.com	
3	김영분	〃	부의장	010-3338-8711 kyb8711@hanmail.net	
4	신현환	〃	의원	010-9039-0114 whoami0309@hanmail.net	
5	심형진	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010-8972-0184 chung_han@hanmail.net	
6	박인규	시민과대안연구소	소장	010-5411-4806 icpik@hanmail.net	
7	인수범	〃	연구위원	010-8529-1457 insb21@hanmail.net	
8	지문철	인천시약사회	약국경영이사	010-4597-6470 jmcheol@hotmail.com	
9	김남운	계양구마을 기업행북동사람들	대표	010-2999-0027 woonie@naver.com	
10	이용선	계양구마을 기업계양한우리(준)	대표	010-5321-8006 handypia575@naver.com	
11	이찬영	사회적기업 인천자바르떼	대표	016-779-0236 dunum@lycos.co.kr	

12	홍상철		국회의원 보좌관(선)	010-2685-3606 iron1009@hanmail.net	
13	송영석	인천평화의료생협	전무이사	010-3755-1195 jjibine@hanmail.net	
14	김양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강사	010-3393-7698 meiji1122@gmail.com	
15	임병조	전교조	전인천지부장	010-4171-1971 bjl1024@hanmail.net	
16	김성기	푸른생협	상무	010-6791-0421 pureundure@daum.net	
17	정동근	민주평화초심연대	대표	010-5473-4720 icdemo@hanmail.net	
18	정종철	미래산업	대표	010-5410-0630 mips2002@hanmail.net	
19	김도균	남동자활센터	기획실장	010-5329-1173 kdg200011@hanmail.net	
20	이성수	인천광역자활센터	센터장	010-2275-6308 otnuri@nate.com	
21	정세일	인천광역시장 시민사회특보		010-4711-0220 sijeong55@hanmail.net	

3) 주관단체

사단법인 시민과대안연구소(소장 박인규)를 지정하여 주요 교육 강좌 기획 및 운영 시 실무적 준비와 진행을 함께하는 단체로 지정함. 별도의 예산을 지출없이 필요한 경비만 일부 지원하기로 함.

3. 연구모임의 운영계획 및 예산계획

1) 연구모임 주요 활동계획 내용:

(1)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 및 강좌 개설
(2) 협동조합의 국내와 사례 조사
(3)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입안
(4)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도출

2) 연구 방법 및 세부계획

(1) 국내외 연구 자료 및 관련 서적 구입
(2) 협동조합에 대한 공개강좌 개설(시의원, 공무원, 시민에게 공개)
(3) 국내외 현장 방문
(4)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5)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6) 연구 모임 회원 간의 깊은 논의를 통한 연구 과제 완성

3) 연구모임 예산 계획

■ 국내외 연구 자료 및 관련 서적 구입 : 30만원
* 추후 시의회 자료실에 1부 이상 비취(연구 논문은 책자는 회원 수만큼)

■ 협동조합에 대한 공개강좌 개설: 1백2십만 원

* 총 5회 강좌 *회당 강사료 20만원 + 자료집 비용 20만원
* 장소는 시의회 의원 총회실 사용

■ 국내외 현장 방문 : 국내 5회, 국외 1외 예정 1백만 원
* 국내 5회는 회당 20만원, 국외는 개인 비용사용

■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1회 50만원

■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1백 1십만 원

* 간담회 3회 *회당 20만원
* 토론회 1회 *회당 50만원

■ 연구 모임 회원 간의 깊은 논의를 통한 연구 과제 완성 : 9십만원
* 워크숍 및 기타 비용

- 총 5백만원 예정, 세부 계획서는 추후 제출 및 활동 중 일부 경비 항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연구모임 일정 계획

2012년 12월 연구모임 등록 신청
2013년 1월 승인 완료
2013년 2월 연구 모임 발족 및 활동 시작
2013년 2월 중 관련자료 수집, 개별 및 공동학습 시작
2013년 4월 - 5월 협동조합 공개강좌 개설
2013년 6월 - 8월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2013년 9월 내부 연구 및 워크숍
2013년 10월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13년 11월 30일 연구 활동 추진 및 연구보고서 작성
2013년 12월 15일까지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4. 연구모임의 교육계획 및 진행상황

1) 교육 목표

시의원과 시민이 함께 협동조합에 관한 원리・역사・법률・국내외 사례를 충실히 학습하여 인천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나설 수 있도록 조례제정 및 지원정책 수립을 목표로 한다.

2) 교육 방향

(1) 시민 개방형・참여형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교수자 중심의 강의식 전달 방식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평생 학습 방식으로 최대한 진행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참여자의 준비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3) 학구적 방식보다는 실제 필요한 내용(내게 맞는 협동조합은 무엇일까? 무슨 협동조합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 내용은 무엇이었으면 좋을까? 등) 중심으로 편성한다.
(4) 좌석은 가급적 원탁형식으로 배치하여 시민참여가 자유롭게 한다.
(5) 학습의 결과 의원・연구자・참여시민들의 (가칭)“협동조합 인천시민 네트워크”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교육 주최와 주관

- 주최 : 인천광역시의회 협동조합 연구모임
- 주관 : 시민과 대안 연구소와 시민준비위원

* 매 주제에 대하여 한분의 의원이 좌장을 맡고 3명의 준비위원이 함께 준비하고 공동 진행하는 방식으로 함.

4) 학습 장소

- 인천광역시청 대강의실, 좌장을 맡은 시의원 지역구 구청 강당

5) 학습 시기 및 연락체계

- 5월 1일(수) 오후 4시부터 7월 21일까지 총 7회 강의, 1회 현장학습, 1회 워크숍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지・자료게시・강의평가 등을 한다.

6) 참여자 및 비용

(1) 의원연구모임 소속 인천시의원과 교육에 참가하고자하는 인천시의회 의원
(2) 의원연구모임이 주관한 4회의 공부모임에 함께한 20여명의 시민준비위원
(3) 인천시민
-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분으로 협동조합연구모임에서 지정한 서적 3-5권과 자료를 사전에 학습하고 매 주제마다 사전 배포한 자료를 읽고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분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신청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함. (www.icouncil.go.kr)

(4) 전체 참여규모는 60여명 정도로 예상.
(5) 의원연구모임 예산에서 자료집 제작비 외부 강사료 외부 토론자 비용 등 사용. 시민의 강의 참가비는 없고 현장학습비 워크숍 뒷풀이 비용은 본인 부담.

7) 교육 세부 계획

(1) 1회 기조 강의
- 주제 : “협동조합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 부제 :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개념 기본법 국내외 사례 중심)
- 강사 : 최영찬(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시간・장소 : 5월 1일(수) 오후 4시 인천광역시청 대회의실
- 좌장 과 준비위원 : 강병수 박인규 홍상철

(2) 2회 강의
- 주제 : 치열한 자본주의 시장 경쟁체제에서 협동조합이 생존 발전할 수 있는 원리와 지향은 무엇인가?(협동조합과 주식

회사와의 근본적인 차이와 7가지 원칙 그리고 현실적인 한계 등)

- 강사 : 권영근(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 시간・장소 : 5월 16일(목) 오후 4시 계양구청 6층 대회의실
- 좌장 과 준비위원 : 이한구 이용선 김남운 김양태
- 권영근 소장님으로부터 강의를 듣고 좌장과 준비위원이 준비한 질문을 한 후 참여 시민들의 자유로운 질문과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

(3) 3회 강의

- 주제 : 우리는 왜 인천에서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하였고 새롭게 주목하는가? (인천지역 운영 경험이 있는 협동조합과 새로이 추진하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묻고 답하기)
- 시간・장소 : 5월 30일(목) 오후 4시 남동구청 회의실
- 좌장 과 준비위원 : 김영분 김성기 심형진 송영석
- 푸른생협, 평화의료생협, 통신협동조합, 신규등록한 협동조합 중 2군데가 각각 자료를 제출하고 5분간 발표한 후 참여 시민과의 자연스런 대화를 통하여 학습 진행. 질문 및 토론자 3명은 사전 섭외.

(4) 4회 강의

- 주제 : 특별 현장학습 : 원주 협동조합 방문 학습
- 시간・장소 : 6월 15일(토) 오전 8시 - 오후 8시
- 좌장과 준비위원 : 인수범 이찬영 정종철 이성수
- 참여를 원하는 분에 한하여 진행(비용 본인 부담)

(5) 5회 강의

- 주제: 내가 참여・추진하고 싶은 협동조합과 예상되는 문제 해결

방안 도출

- 시간・장소 : 6월 27일(목) 오후 4시 남구청 회의실
- 좌장 과 준비위원 : 신현환 지남철 임병조 김도균
- 학습에 참여한 시민들이 직접 협동조합 설립 계획서를 만들어 발표하고 경험있는 조합과 전문가가 이를 평가하고 컨설팅 해보기

(6) 6회 강의

- 주제 : 국가와 인천광역시는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법률적・재정적・행정적・교육적・금융적 지원책 모색)
- 시간・장소 : 7월 11일(목) 오후 4시 부평구청 대회의실
- 좌장 과 준비위원 : 강병수, 정동근, 김도균
- 협동조합기본법과 시행령 분석, 타 지역 조례 분석, 정부의 협동조합 정책 분석, 인천시 협동조합 관련 정책
- 지경부 관계공무원, 인천시 관계공무원, 인천지역 연구자 1인 참여 섭외

(7) 7회 : 워크숍

-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개최 (세부계획 추후 수립)
- 시간・장소 : 7월 20- 21일(토・일) 1박 2일. 강화로얄유스호스텔 예정
- 참여를 원하는 분에 한하여 진행(비용 본인 부담)

5. 연구모임 교육계획 진행 상황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경제모델인 "협동조합"
어디가 어떻게 왜 좋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협동조합 교육 강좌 (총7회 중 2강)

자본주의 시장 경쟁체제에서 협동조합이
생존·발전할 수 있는 원리와 지향은 무엇인가?
강사 : 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시간 : 5월 16일 (목) 오후 4시
장소 : 계양구청 7층 신비홀
문의 : 032-440-6225
주최 : 인천광역시의회 협동조합 연구모임
(강병수,김영분,이한구,신현환)
주관 : 시민과대안연구소와 시민준비위원

참가신청은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www.icouncil.go.kr)의
의정활동/의원연구활동/협동조합연구모임/해당강좌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경제모델인 "협동조합"
어디가 어떻게 왜 좋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협동조합 교육 강좌 (총7회 중 3강)

인천지역 사례 발표
푸른생활협동조합(김성기 상무)
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송영석 전무)



시간 : 5월 30일 (목) 오후 4시
장소 : 남동구 보건소(남동구청 옆)
문의 : 032-440-6225
주최 : 인천광역시의회 협동조합 연구모임
(강병수,김영분,이한구,신현환)
주관 : 시민과 대안 연구소와 시민준비위원

참가신청은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www.icouncil.go.kr)의 의정활동/의원연구활동/협동조합연구모임/해당강좌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경제모델인 "협동조합"
어디가 어떻게 왜 좋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협동조합 교육 강좌 (총7회 중 4강)

현장학습(협동조합의 고장 원주시 방문)

※ 40명 선착순 모집



시간 : 6월 15일(토) 오전 8시

장소 : 인천시의회 별관앞 출발

회비 : 1만원(식사제공)

문의 : 032-440-6225

주최 : 인천광역시의회 협동조합 연구모임
(강병수,김영분,이한구,신현환)

주관 : 시민과 대안 연구소와 시민준비위원

참가신청은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www.icouncil.go.kr)의 의정활동/의원연구활동/협동조합연구모임/해당강좌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경제모델인 "협동조합"
어디가 어떻게 왜 좋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협동조합 교육 강좌 (총7회 중 5강)

주 제 : 우리가 꿈꾸는 협동조합과 컨설팅
발표자 : 최환 '일자리 단절 여성을 위한 협동조합'
지문철 '약국 협동조합'
김유정 '자활기업에서 협동조합으로 집 고치기'
컨설팅 : 김성기(푸른생협 상무)
송영석(평화의료생협 전무)



시간 : 6월 27일(목) 오후 4시
장소 : 남구 숭의보건지소(남구청 옆)
문의 : 032-440-6225
주최 : 인천광역시의회 협동조합 연구모임
(강병수,김영분,이한구,신현환)
주관 : 시민과 대안 연구소와 시민준비위원

참가신청은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www.icouncil.go.kr)의 의정활동/의원연구활동/협동조합연구모임/해당강좌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경제모델인 "협동조합"
어디가 어떻게 왜 좋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협동조합 교육 강좌 (총7회 중 6강)



주 제 : 국가와 인천광역시는 협동조합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발표자 : 이원재(한겨레경제연구소장)
양준호(인천대 교수)

토론자 : 박인규(시민과 대안연구소장)
송영석(인천평화의료생협 전무)

시간 : 7월 11일(목) 오후4시

장소 : 인천여성가족재단 강당(부평구청역)

문의 : 032-440-6225

주최 : 인천광역시의회 협동조합 연구모임
(강병수,김영분,이한구,신현환)

주관 : 시민과 대안 연구소와 시민준비위원

참가신청은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www.icouncil.go.kr)의 의정활동/의원연구활동/협동조합연구모임/해당강좌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경제모델인 "협동조합"
어디가 어떻게 왜 좋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인천 협동조합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 제 : 인천지역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

발표자 : 장원봉(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토론자 : 신현환(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김용열(미추홀신협 전무)
송영석(인천생활협동조합협의회 대표)
박인규(시민과대안연구소 소장)
심형진(인천협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장)



시간 : 1월 17일(금) 오후4시

장소 : 인천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 032-440-6225

주최 : 인천광역시의회 협동조합 연구모임
(강병수,김영분,이한구,신현환)

주관 : (사) 시민과대안연구소

참가신청은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www.icouncil.go.kr)의 의정활동/의원연구활동/협동조합연구모임/해당강좌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6. 연구모임의 성과

1) 조례제정 1 :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명 :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73				
제안일	2013.04.17	처리내용	조례안-의원발의	소관위원회	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영분	발의자	강병수,이한구,신현환,이재병	제안회기	제6대 - 제208회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13.04.18	상정일	2013.04.30
의결일	2013.04.30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13.05.06	상정일	2013.05.06
의결일	2013.05.06	처리결과	원안가결

첨부파일

- 873._인천광역시_협동조합_지원에_관한_조례안.pdf
- 인천광역시_협동조합_지원에_관한_조례안_심사보고서.pdf

제안의원	강병수, 김영분, 신현환, 이재병, 이한구		
집행기관이송일	2013.05.06	공포번호	5238
공포일	2013.05.27	철회일자	

2) 조례제정 2 :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명 :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47				
제안일	2013.11.22	처리내용	조례안-의원발의	소관위원회	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영분	발의자	김영분, 허인환, 이한구, 윤재상, 김정헌, 안병배, 조영홍, 강병수	제안회기	제6대 - 제212회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13.11.22	상정일	2013.12.05
의결일	2013.12.05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13.12.20	상정일	2013.12.20
의결일	2013.12.20	처리결과	원안가결

첨부파일

- 2_1047._인천광역시_사회적기업_육성_및_지원에_관한_조례_전부개정조례안.pdf
- 18)1047._심사보고서(사회적기업_육성_조례_전부개정).pdf

제안의원	강병수, 김영분, 김정헌, 안병배, 윤재상, 이한구, 조영홍, 허인환		
집행기관이송일	2013.12.20	공포번호	5313
공포일	2014.01.09	철회일자	

2) 시민과 함께 하는 교육강좌

(1) 1차 교육 강좌(2013년 5월 1일) 참여자 : 총 76명

(2) 2차 교육 강좌(2013년 5월 16일) 참여자 : 총 98명

(3) 3차 교육 강좌(2013년 5월 30일) 참여자 : 총 98명

(4) 4차 교육 강좌(2013년 6월 15일) 참여자 : 총 40명

(5) 5차 교육 강좌(2013년 6월 27일) 참여자 : 총 57명

(6) 6차 교육 강좌(2013년 7월 11일) 참여자 : 총 80명

(7) 7차 교육 강좌(2014년 1월 17일) 참여자 : 총 29명

3) 언론보도

인천일보

인천시의원, 협동조합 연구단체 조직

2013년 01월 07일 (월)

시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가 조직될 전망이다.

강병수, 김영분, 이재병, 이한구 시의원은 '협동조합 연구모임'의 연구단체 등록을 시의회에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의원들은 협동조합이 새로운 사회적 경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깊은 이해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단체를 결성해 체계적인 연구를 할 계획이다.

국내외 연구자료와 서적을 공부하는 한편 협동조합에 대한 공개강좌를 개설해 일반인과 공무원 등에게도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청회와 토론회를 하면서 연구 과제를 완성하기로 했다.

시의회 조례에 따라 이들에게는 500만원의 경비가 지원된다.

/장지혜기자 jjh@itimes.co.kr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인천시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협동조합 강좌

기사입력 : 2013년04월25일 14시41분

(아시아뉴스통신=**손상원** 기자)

인천시의회(이성만 의장)는 강병수의원을 대표로 김영분 부의장, 신현환 의원, 이한구 의원이 함께 뜻을 모아 협동조합 연구모임을 창설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김성기 푸른생협 상무 등관련기관 전문가들 15명이 가입해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매달 2회 정기 모임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협동조합 연구모임은 다음달부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형 협동조합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수자 중심의 강의식 전달 방식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이를 위해 사전에 참여자의 준비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됐다.

교육 내용은 내게 맞는 협동조합은 무엇인가? 무슨 협동조합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 내용은 무엇이었으면 좋을까 등 실제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편성됐다.

협동조합 연구모임은 다음달 1일 오후 4시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최영찬 서울대교수의 기초강의를 시작으로 오는 7월 21일까지 총 7회의 교육, 1회 현장학습, 1회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며, 협동조합 강의에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의회 홈페이지(www.icouncil.go.kr) 의정활동, 의원연구활동 란에 게시돼 있다.

경기신문

인천

협동조합 연구모임, 내달 1일 강의 개시

최영찬 서울대교수 초빙
실용적인 내용 중심 교육

김상섭 기자 | kss@kgnews.co.kr

승인 2013.04.26 전자신문 10면

인천시의회가 협동조합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을 창설,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최영찬 서울대교수를 초빙해 기초강의를 시작한다.

이번 연구모임은 강병수 의원을 대표로 김영분 부의장, 신현환 의원, 이한구 의원이 함께 뜻을 모아 창설됐다.

현재까지 김성기 푸른생협 상무 등 관련기관 전문가들 15명이 가입해 지난달까지 매달 2회 정기 모임을 열어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모임은 다음달부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형 협동조합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 프로그램은 교수자 중심의 강의 전달 방식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 내용은 '내게 맞는 협동조합은 무엇인가?', '무슨 협동조합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 내용은 무엇이었으면 좋을까?' 등 실제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편성됐다.

연구모임은 다음달 1일 강의를 시작으로 오는 7월21일까지 총 7회의 교육, 1회 현장학습, 1회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며 협동조합 강의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의회 홈페이지(www.icouncil.go.kr)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인천최초 인터넷 신문 즐겨찾기
인천뉴스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후원하기

인천뉴스

인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마련

2013년 05월 01일 (수) 10:43:20 양순열 press@incheonnews.com

인천시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된다.

인천시의회는 산업위원회에서 4월30일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영분 의원을 대표로 강병수 · 이한구 · 신현환 · 이재병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는 인천시장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협동조합 육성 ·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동조합지원위원회와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협동조합 관련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지원센터는 협동조합 모델 개발 · 정책 연구, 협동조합 간 협력 지원, 실태조사 등을 수행한다.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김영분 · 강병수 · 이한구 · 신현환 의원은 '인천시의회 협동조합 연구모임'을 꾸려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1일 오후 4시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최영찬 서울대 교수를 초청해 '협동조합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라는 주제로 협동조합 교육 강좌를 연다.

연구모임은 오는 7월 21일까지 7차례 교육과 현장학습,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지역내 협동조합 관계자와 모임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일보

2014년 01월 23일 (목) 장지혜

인천시의회의 협동조합 연구모임은 강병수 시의회 의원이 발족해 만들어졌다.
강 의원 외에 김영분·신현환·이한구 시의원이 함께 하고 있다.
지난해 초 출범한 협동조합 연구모임은 협동조합이 새로운 사회적 경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깊은 이해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국내외 연구자료와 서적을 공부하는 한편 협동조합에 대한 공개강좌를 개설해 일반인과 공무원 등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활발한 활동
협동조합 연구모임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연구모임은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최영찬 서울대교수를 초빙해 기초강의를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내게 맞는 협동조합은 무엇인가?', '무슨 협동조합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 내용은 무엇이었으면 좋을까?' 등 실제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편성됐다.
수차례에 걸친 교육과 현장학습, 워크숍이 진행됐다.
지난 17일엔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 협동조합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신현환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과 김용열 미추홀신협 전무, 송영석 인천생활협동조합협의회 대표, 박인규 시민과대안연구소 소장, 심형진 인천협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인규 ㈔시민과대안연구소 소장은 인천지역 협동조합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서 "하루 평균 8.5개의 신생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며 주변에 협동조합을 이야기하거나 설립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1년이 지난 지금 기대의 반대편에서는 과연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존 협동조합과 신생 협동조합들이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의 정신을 기초로 해 구축하는 협동조합네트워크(협의회)는 협동조합 자체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에도 주요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다시 협동조합네트워크의 강화와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연구모임은 지난해 5월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법규로 활동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조례는 협동조합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이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 주민들의 권익와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다.

또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협동조합 등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교육, 홍보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장지혜기자 jjh@itimes.co.kr

4) 정책제안

인천 협동조합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안)

○ 인천의 협동조합의 발전 방향과 과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하고 협동조합발전을 도모한다.

1. 행 사 명 : 인천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
2. 일　　시 : 2014년 1월 17일(금) 오후4시
3. 장　　소 : 인천광역시청 대회의실
4. 주　　최 : 인천광역시의회 협동조합연구모임
5. 주　　관 : (사)시민과대안연구소
6. 참석대상 : 인천사회적경제 관련 제단체 회원, 협동조합조합원, 시민단체, 언론 등
7. 주요내용

□ 인 사 말 : 김광석(인천광역시 경제수도추진본부장)

□ 좌　　장 : 강병수(인천광역시의회 의원)

□ 주제발표

- 인천지역협동조합네트워크구축의 필요성과 방향
  장원봉(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 토　　론

- 토론 1. 신현환(인천광역시의회 의원)
- 토론 2. 김용열(미추홀신협 전무)
- 토론 3. 송영석(인천생활협동조합협의회 대표)
- 토론 4. 박인규(시민과대안연구소 소장)
- 토론 5. 심형진(인천협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장)

8. 세부 진행순서

-사회자 : 박인규(시민과대안연구소 소장)

순 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등 록	15:30 ~	· 등록	
개 회	16:00 ~	· 사회자	
인 사 말	16:05 ~	· 김영분(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	
축 사	16:12 ~	· 행정부시장	
내빈소개	16:15 ~	· 사회자) 내외빈 소개, 좌장, 발제자, 토론자 소개	
주제발표	16:20 ~	· 장원봉(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20분
종합토론	16:40 ~	· 좌장) 강병수(인천광역시의회 의원)	
		· 토론 1. 신현환(인천광역시의회 의원) · 토론 2. 김용열(미추홀신협 전무) · 토론 3. 송영석(인천생활협동조합협의회 대표) · 토론 4. 박인규(시민과대안연구소 소장) · 토론 5. 심형진(인천협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장)	각10분
질의응답	17:30 ~	· 좌장) 발제자, 토론자, 청중	
토론회정리	17:50 ~	· 좌장) 토론회에 대한 총정리	
폐 회	18:00 ~	· 행사종료	

7. 향후 계획

“사회적 경제 인천광역시를 만들겠습니다”

(은빛기획 출판사 “강병수 의원 사용설명서”에서 PP 172-192에서 발췌 일부 발췌)

세상을 살리는 사회적 협동경제

■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

2012년, 백과사전의 대명사 <브리태니커>가 “더 이상 종이 인쇄본 백과사전을 제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768년 1권을 시작으로 1771년 초판 3권을 완간한 후 지난 240여 년간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아온 백과사전이 세계인의 책꽂이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브리태니커의 퇴장 배경에는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의 등장이 있습니다.
2001년에 탄생한 위키피디아는 불과 10년 만에 정보의 양과 생성 속도에서 기존의 백과사전들을 압도했고, 정확성에서도 뒤지지 않게 됐습니다. 협업을 통한 집단지성으로 대표되며 ‘위키노믹스(Wikinomics)’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위키피디아의 완승이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변화와 혁신의 양과 속도는 그 이전 1000년 동안 일궈낸 것보다 클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겪게 될 변화는 우리 인류가 지난 100년 동안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처럼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전환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영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영역에서는 시장만능 신자유주의의 폐해와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협동경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상생의 시대로, 경쟁의 시대에서 협동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익숙한 과거에 더 오래 머무를 것인가, 낯선 새로운 길을 더 빨리 찾아 나설 것인가가 우리 앞에 놓인 숙제입니다.

2013년 11월 7일, 서울시가 주최한 ‘국제 사회적경제 포럼’에서 <서울선언>이 채택됐습니다. 이 선언은 새로운 사회혁신을 시민참여형 공공-민간-공동체 파트너십으로 표현하고, 위기 이후의 발전 모델로 시장경제와 공공경제, 그리고 사회적경제를 조화시키는 다원적 경제를 제시했습니다.
<한겨레> 김현대 선임기자는 ‘사회적경제의 오래된 가치’라는 칼럼(2013.5.9)에서 “우리 경제는 근대화 이후 권위주의의 공공경제로 터를 다진 뒤, 외환위기를 맞아 시장만능경제로 훌쩍 건너뛰었다. 양 극단 사이에서 사회적경제가 뿌리내릴만한 역사적·사회적인 틈이 없었다. 하지만 시장경제와 공공경제만으로 돌아가는 선진국의 현실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한 경제란 예외 없이 시장경제, 공공경제, 사회적경제가 적절한 균형을 이룬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과 소비자가 주도하는 시장경제는 더 공정하고 건전하게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경제의 역할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공공경제의 역할을 축소하고 부정하기까지 하는 신자유주의 시각은 극복돼야 합니다.
이제 여기에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시민참여형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한 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시장경제, 공공경제, 사회적경제의 삼각 축이 고르게 튼튼한 경제가 우리의 미래, 인천 경제의 내일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는 분명 새로운 시대정신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경제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센터의 정상훈 센터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과 배제, 승자독식, 99%의 불행으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는 최근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 왔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사적 종언을 고하고 있고, 한국사회 역시 크게 보면 거대한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시대정신은 무엇인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선거 과정에서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경제 역시 시대정신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 아니라 상호적 혹은 호혜적이라는 인간학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300년 역사에서 해결하지 못한 빈곤, 무지, 질병, 오염, 부패 문제를 협력과 연대 나눔이라는 운영원리를 통해 기존에는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전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사회적경제가 해결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보다는 희망사항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통한 돌봄 확대, 일자리창출, 지역공동체 회복 등 사회적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을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경제체제를 합리화해 왔습니다.
물론 인간의 속성에는 이기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상호적이고 협동적입니다. 우리에게는 경쟁과 약육강식이 아니라 협동과 공존, 상생이 더 잘 맞고 이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을 '협동형 인간', '상호적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상호적이고 협동적인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경제 시스템이 바로 사회적경제입니다.
상호적 인간에 대해서는 한겨레경제연구소 이봉현 연구위원이 <한겨레>에 쓴 글(2013.9.3.)이 잘 설명하고 있어 이를 축약해 소개합니다.

[싱크탱크 광장] 협력하는 인간이 만드는 희망, 경제적 인간은 가라
2008년 터진 세계 경제위기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인간이 태어나고 있다. 바로 '협동형 인간'(상호적 인간: Homo reciprocan)이다. 협동형 인간은 합리적·이성적인 면과 함께 비합리성과 감성적인 면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사회를 이뤄 서로 의지하고 돕는 인간이다.
복지사회와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유경제가 활성화하는 뒤편에서는 논문, 책, 대중매체의 보도, 강연 등을 통해 새로운 인간형이 만들어지고

있다. ……
상호적 인간은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의 알을 깨고 나왔다. 경제적 인간은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근대 학문이 만들어낸 이야기였다. 경제적 인간은 시장에 적합한 인간인데 이익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해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이기적 선택)을 한다. 가격이 행동을 결정하는 시장거래에서 인간은 실제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다만 시장이 세상만사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믿는 근본주의가 득세하면서 인간의 합리성과 이기심이 지나치게 강조된다. 특히 지난 30~40년을 휩쓴 신자유주의는 시장이 자연적이며 완벽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걸 돌아가게 하는 인간도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기 위해 소유권을 확실히 하고 정보 유통의 제한을 없애며 정부의 개입과 같은 '잡음'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보다는 '희망사항'에 불과했지만 추상과 고등수학이란 '거탑' 위에 올라앉은 주류 학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 뿐이다. ……
경제적 인간은 이론에서 먼저 반박을 당했다. 행동경제학의 연구는 인간이 완벽한 정보를 갖고 합리적 판단을 하기보다는 제한된 범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함을 보여준다. 메뉴판에서 중간 가격을 고르듯 우리의 행동은 준거의존적이다. 광고를 보면 마음이 바뀌듯 정보가 어떻게 '프레임' 되느냐도 중요하다. 이렇게 인간의 본성이 불합리하기에 시장의 거품과 붕괴가 반복되는 것이다. ……
인간사회에서 1+1을 3으로 만드는 방법은 협력이다. 인간의 협력적 본성은 계발돼야 하는데 대화나 토론 같은 소통을 늘리면 발전한다. 서로의 관계를 장기로 가져가고, 집단의 크기를 줄여 친밀성을 높이는 것도 협력의 밀도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 협력의 바탕이 되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을 강제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한다.
상호적 인간이 부각되는 것은 단지 도덕적 의무감 때문만은 아니다. 경제·사회적으로 인간의 그런 속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첫째, 경쟁뿐 아니라 협력의 경제적 가치를 알게 됐다. …… 둘째, 경제가 제조업을 벗어나 지식기반 경제로 변했다. ……
결국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신뢰의 네트워크를 확산하고 서로 협력하는 '상호적 인간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 성장의 한계에 부닥친 한국 경제의 과제인 것이다.
<글: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익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기적 선택'을 한 것은 경제적 인간만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기업은 더욱 그러했고 많은 나라의 정부들도 그랬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방행정은 규격화와 획일화 등을 통한 효율적 예산 배분에 초점을 맞춰 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1+1을 3으로 만드는 협력적 방법'을 찾을 때입니다. 지역 사회 각 주체 간의 대화와 소통을 늘리고, 집단의 크기를 줄여 친밀도를 높이고, 상호신뢰를 강화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지역 살리기 사회적경제가 대안이다

1980년대 대학에서 나와 사회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저는 '지역'에 주목했습니다. 제가 자라고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천에서 공장 노동자로 노동운동을 할 때도 지역사회와의 결합

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한겨레 지국장으로 일하고, 계양산살리기운동본부 간사로 활동하는 등 언론운동, 환경운동, 시민운동을 할 때도 '지역공동체 살리기'에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실천해 온 게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문화센터에서 바쁘게 일하느라 지역 활동에 제약이 있을 때도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천시의원이 된 후에는 '협동조합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인천시장이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협동조합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동조합지원위원회와 협동조합 모델 개발·정책 연구, 협동조합 간 협력 지원,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동료 의원들에게 제안해 2013년 1월 인천시의회에 '협동조합 연구모임'을 만들고 대표를 맡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는 시의원은 물론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의 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관심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지역기업과 시민, 지자체까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회적 협동경제 생태계를 인천시에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3년 11월 22일,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제정했습니다. 바뀐 조례를 통해 인천광역시의 사회적경제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의무화했으며 기존의 마을기업지원센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를 통합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사회적경제, 사회적 협동경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사회적 대안경제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자나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른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같은 의미로 쓰고 있고, 특히 사회적 협동경제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협동하는 인간이 사회적경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회적경제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서울시 공식 블로그에는 "경쟁과 이윤 중심이 아닌, 호혜와 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대안적 경제공동체를 뜻한다."고 정의돼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경쟁이 아닌 호혜와 연대라는 가치에 기반해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 소비, 교환, 분배가 이뤄지는 경제 시스템'이라는 설명도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호혜와 협력 연대를 바탕으로 빈곤과 소외를 극복하고 공동체 문화를 살리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관 등 다양한 사회경제 주체들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제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경제의 기본원리는 △이윤 추구보다 구성원에게 서비스 제공 우선 △자율적인 운영 △민주적 의사결정 △자본과 이윤의 배분보다 사람과 노동 우선 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날 왜 수많은 나라에서 사회적 협동경제가 활발하게 시도되고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게 된 것일까요?
협동조합의 역사는 영국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100년이 넘었고, 사회적기업들도 수

십 년 전부터 등장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70대 강원도 원주 등에서 협동조합이 탄생한 후 꾸준히 성장해 왔으니 그 역사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세계경제의 후퇴와 금융 위기 등을 거친 1990년대와 2000년대부터입니다.
시장만능을 숭배하는 정치경제 체제는 자본이 팽창하고 성장하는 호황기에는 그 과실을 소수가 독점해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다 경기가 침체되고 거품이 붕괴해 몰락할 때는 빈곤층과 가난한 국가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빨리 더 크게 피해를 끼쳐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왔습니다. 이런 냉혹하고 부조리한 경제 현실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적경제가 새롭게 부상한 것입니다.

인천대 사회적기업연구센터장인 양준호 교수는 인천시의회 협동조합연구모임 교육강좌 주제발표(2013.7.11.)에서 많은 나라들이 사회적경제(협동조합)에 주목한 배경으로 가장 먼저 '시장의 실패'를 꼽았습니다. 두 번째로 복지를 공급하는 새로운 주체에 대한 필요성, 세 번째는 보다 민주적인 경제시스템에 대한 지향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 교수는 또 "역사적으로 '시장의 실패'의 귀결로서 그 필요성이 대두된 국가의 경제에 대한 조정은 1970년대 이후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재정위기 및 관료제의 폐해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그 지속가능성과 유효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또 실제로 그 기능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의 경제에 대한 조정이 문제시 되면서, 또 다시 시장 조정의 기능을 강조하고 또 이의 복원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반동적 경향을 '신자유주의'로 규정할 수 있는데, 바로 이에 대항하기 위한 움직임으로서 협동조합 또는 '비영리 협동섹터'로 불리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지역 차원에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에 주목하고 이들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지역경제의 쇄락과 공동체 해체 등 오늘 날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바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경제 위기를 겪고 이탈리아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수도'로 불리는 볼로냐의 지역경제는 튼튼합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지역공동체가 살아있고,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복지, 소통 등 모든 면에서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를 통한 인천 발전 전략

인천의 미래,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어디에 길이 있을까요?
지금 구체적인 해법과 정확한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인천시가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이 행복해 하며 살아가는 도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 기업이 거둔 경제적 과실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환원 등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많아져야 합니다. 또 집 가까이에 자기를 성장시키고 계발할 수 있는 배움터, 즐겁

게 어울려 소통하는 놀이터도 더 많이 확충해야 합니다.
지난 날 우리들은 농지를 갈아엎고 바다를 메워 그 곳에 신도시 아파트를 짓고, 큰 공장과 높은 건물을 세우고, 넓은 길을 내면 주민들의 삶도 저절로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더미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은 좋은 이웃들과 교류하고 소통해서 더 많이 공감할 때 진정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도 경제주체들이 서로 돕고 협동하며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 나누어 질 때 고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사회적경제를 가꾸고 키우는 데서 인천의 미래를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적경제를 더욱 확대하고 성장시켜 주민들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하려면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넓히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즉, 사회적경제 담론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 토론, 체험 프로그램을 더 많이 기획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창업하고 성공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전문가를 많이 양성해야 합니다.
세속적 성취를 거둔 기업에는 반드시 세속적 기업가 정신으로 똘똘 뭉친 경영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협동조합이 설립 목적에 맞는 '사회적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혁신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또 이를 뒷받침하고 지원할 연구자와 정책 기획·조정자 등 관련 전문가도 많이 필요합니다.
또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각 기업과 조합, 단체들이 서로 더 많이 협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좋은 모델을 만들고 모범을 널리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인천시와 자치구와 같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천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일꾼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인천시의회는 조례와 예산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집행부가 여기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견인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를 통한 인천 발전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경제를 통해 인천지역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정원각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표는 <한겨레>에 쓴 칼럼(2013.10.11.)에서 "(나는) 협동조합을 하는 이유로 '지역의 민주적인 자치 실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실 '자치'와 '지역'은 협동조합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열쇳말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처럼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은 그 지역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도 함께 성숙하고 발전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의 기본 운영원리가 바로 민주주의이고, 참여를 통한 자치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 캐나다에서 열린 '제15회 세계사회연대경제 포럼'에서 낸시 님턴(Nancy Neamtan)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은 개최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민참여, 민주주의, 연대와 통합에 기초한 사람중심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경제는 서로 간에 많은 차이점이 있다 할지라도 국제적인 연대협력을 통해 함께 경험을 나누고 근본적인 신념을 공유할 때, 지역공동체와 정부, 국제기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때, 비로소 새로운 미래에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여타의 경제 개발과 달리, 부를 창출함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 말이죠."<오마이뉴스, 2012.5.21>
낸시 님턴의 말 또한 민주주의와 사회적경제의 긴밀한 상호 관계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민주적 운영원리를 지키고 자치의 원칙을 확산시키며 자립에 성공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도 한층 강화하게 됩니다. 사회적경제의 성공이 지방자치의 확대와 성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발달한 이탈리아와 스페인, 캐나다의 도시들 중에는 협동조합 활동이 활발한 곳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협동조합인 몬드라곤이 있는 스페인의 바스크,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 캐나다의 퀘벡 등은 사회적경제가 발달한 대표적 도시들인데, 이곳 모두가 지방자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지방자치가 성숙할수록 사회적경제도 더욱 활발해지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와 지방자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인천의 지역발전 전략 중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회적경제를 통한 인천 발전 전략의 두 번째는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회적 자본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퍼트넘(Robert Putnam)은 사회적 자본을 "행위의 조정을 촉진하여 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 조직의 속성"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 출신 경제학자 파샤 다스굽타(Partha Dasgupta)는 "합의된 상호강제 구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 라고 정의합니다.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이런 견해를 종합해 "사회적 자본이란 구성원들이 신뢰하고 협동할 수 있도록 돕는 규범이며, 이 규범을 지키기로 구성원들끼리 상호 강제하는 네트워크"라고 정리했습니다. <인용 : 새로운 시선(블로그) http://sisun.tistory.com/>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국가와 국간 간의 무한경쟁이라고 생각해온 때가 있었고,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호혜하고 연대할 때 보다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신뢰도가 10% 상승할 때 경제성장률은 0.8% 성장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뢰는 이타심과 이기심 사이 어딘가에서 생겨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완전히 이타적인 존재라면 상대를 의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간이 오직 이기적 존재라면 상대방도 이기적으로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생길 수 없습니다. 신뢰는 상대방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 상대가 약속을 지킬 경우 나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행동'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상호적이기 때문에 남이 잘해주면 자기도 거기에

보답해 잘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남이 잘 대해주지 않으면 자기도 잘 대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남들이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도 상대를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처음 행동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국민과 국가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시 살펴볼 대목이 '우리 정부와 지자체, 지방의회의 처음 행동이 국민들에게 어떠했을까'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과거 독재정권과 권위주의 관료체제 시절에 행한 처음 행동이 낮은 신뢰의 뿌리일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가권력이 불편부당하고 공정하다'는 믿음인데 이런 기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거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이 나서서 '먼저 잘해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먼저 잘 대해줄 것입니다. 잘 대해주는 이웃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더 잘 대해주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신과 배반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를 높이 쌓아야 합니다.
신뢰를 제도화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도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규범의 준수 여부에 따른 보상과 응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규범을 지키면 보상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게 바로 제도화입니다. 좋은 제도는 분명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나쁜 법과 제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제도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지만 오늘날 국민들은 악법은 국민의 힘으로 고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쁜 제도를 바로 잡고, 좋은 제도를 정착시켜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사회적 신뢰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인천시와 시의회가 먼저 앞장서서 '처음 행동'을 잘하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게 중요한 지역발전 전략 중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정말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또 누군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경제를 통한 인천 발전 전략의 세 번째는 바로 '공유경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또 다른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 다시 경쟁에 내몰립니다. 소유욕 또는 사적으로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누릴 수 없는 세상이 불러온 소유와 경쟁의 악순환입니다.
공유란 내 것을 누군가와 함께 쓰고, 나도 남의 것을 같이 쓴다는 뜻입니다. 분명 아직 익숙하지 않고, 선뜻 내키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는 이미 새로운 흐름으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고, 공유를 더 많이 받아들이면 그럴수록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공유경제도 다른 사회적경제 분야와 마찬가지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 중에 이웃과 함께 쓸 수 있는 것을 생각했고, 남는 방과 자동차

등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집과 자동차, 텐트와 같은 물건뿐만 아닙니다. 지식과 경험, 재능도 누군가를 위해 나누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후 '공유도시 서울'을 중요한 시정목표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하는 카쉐어링(Car Sharing) 사업을 펼치는 등 공유경제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지자체 등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재화는 소유할 때가 아니라 '제대로 사용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는 관점을 새롭게 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공유는 단순히 물건을 함께 써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속에 '관계 맺기'라는 본질이 담겨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물건을 함께 쓰고 재능을 나누며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협동하는 속에서 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공유경제를 통해 맺는 사람과 지역의 관계는 지역발전을 위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생활정치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시대정신과 협동형 인간 등에 대해 함께 성찰해 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경제를 통해 인천 지역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또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과 공유경제로 다 함께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구상을 밝히고, 이를 통해 이루려는 인천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꿈은 상상하는 만큼 커지고 미래는 실천하는 만큼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사회적 협동경제 관련>

※ 참고도서/자료

정관영. 《이제는 사회적 경제다》. 공동체. 2013
정태인·이수연. 《협동의 경제학》. 레디앙. 2013
김재훈. 《사민주의 복지국가와 사회적 경제》. 한울아카데미. 2013
양준호.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의 의의와 과제>(추가)

※ 참고 사이트

사회적경제센터(희망제작소) http://blog.makehope.org/smallbiz
한겨레 사회적경제 http://se.hani.co.kr/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http://www.sehub.net/
위즈돔 http://www.wisdo.me/index.do

8. 첨부 자료

1)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2)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사 진
4) 강좌별 주제 발표 및 토론자료집

1)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협동조합등을 지원하여 활동을 촉진하고 건전한 발전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3. “협동조합등”이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하며,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2호 및 제4호를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주·자립·자치의 협동조합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산하는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2.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등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교육, 홍보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의 인천광역시 협동조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협동조합 업무 담당 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협동조합 관련 전문가
3.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소집 및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세무·회계·기술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협동조합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3. 협동조합등간의 협력, 지역 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

하기 위한 협동조합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협동조합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동조합등의 모델 개발 및 시의 정책연구
2. 협동조합등간의 협력 지원
3.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모니터링
4. 홍보, 교육, 컨설팅 등 지원
5. 협동조합등의 실태조사
6.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3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제12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시장은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협동조합등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① 시장은 협동조합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05-27 조례 제5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민주화 실현에 기여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시장이 선정한 마을기업

다.「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협회, 단체 등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

4.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시와 군·구, 유관 기관, 시민사회,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제20조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 결과와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군・구,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행정부시장 및 사회적경제 업무 관련 본부장

2.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4. 시민단체 및 유관 기관 대표
5.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에서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 및 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교육훈련 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우선구매의 촉진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조세감면) 시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9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20조(사회적경제조직 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2.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
6. 사회적경제조직 홍보 및 교육
7.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8.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2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직영 또는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이나 제21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위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와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협동조합지원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사진



2013. 5. 1(수), 시청 대회의실



2013. 5. 1(수), 시청 대회의실



2013. 5. 30(목), 남동구 보건소



2013. 6. 15(토), 원주 (협동조합 연구모임 워크숍)



2013. 6. 27(목), 남구 숭의보건지소



2013. 6. 27(목), 남구 숭의보건지소



2013. 7. 11(목), 인천여성가족재단



2013. 7. 11(목), 인천여성가족재단



2014. 1. 17(금), 시청 대회의실



2014. 1. 17(금), 시청 대회의실

4) 강좌별 주제 발표 및 토론자료집 : 별첨자료 첨부